

구분	종류	법적 근거
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	▪평생교육시설	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30조~제38조
	▪시·군·구평생학습관 ▪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	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, 제21조의3 (해당조례)
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	▪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	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조
	▪전문예술법인·단체	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
	▪노인여가복지시설	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
	▪다문화가족지원센터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	▪도서관	「도서관법」 제2조
	▪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	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0조
	▪박물관	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
	▪미술관	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
	▪비영리민간단체	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
	▪여성인력개발센터	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7조
	▪자원봉사센터	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3조(해당조례)
	▪장애인복지관	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4] 2.가,다,아
	▪장애인 주간이용시설	
	▪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	
	▪사회복지관	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
	▪주민자치센터(자치회관)	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조(해당조례)
	▪지방문화원	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2조
	▪평생직업교육학원	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
	▪자동차운전학원	「도로교통법」 제99조
	▪자동차운전전문학원	「도로교통법」 제104조
	▪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	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해당조례)

구분	종류	법적 근거
학점 은행제 기관	■평생교육시설 ■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(軍)의 교육·훈련시설	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	■시간제 등록제(학력보완교육)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등	「평생교육법」제2조 및 제29조 「고등교육법」 제36조

- ※ 그 밖에 국가·지자체가 설치·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사용기관 등록 가능
- ※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원격평생교육시설, 평생직업교육학원(교습계열: 컴퓨터 등), 한국교육방송공사(EBS)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별도 등록관리